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 1999.10.29. 제295호
개정 2000. 6.22. 제317호
2001. 9. 1. 제342호
2002. 7. 6. 제384호
2003.12.10. 제421호
2005.10.10. 제461호
2006. 5.23. 제473호
2007. 5.29. 제488호
2010. 3. 5. 제515호
전부 개정 2011. 7. 1. 제560호
2012. 3.12. 제59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전임교원임용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전형절차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임교원의 신규 채용심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기간의 기준일) ① 신규채용 평가에 관한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한다.

② 연구실적물의 인정 기준일은 제1항에 의하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행된 실적물(게재예정 연구실적물 불인정)을 인정한다.

제4조(점수계산) 모든 점수의 계산은 심사단계별로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제5조(서약서) 교원신규채용심사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별지19호의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세부 사항) 기타 세부 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2장 공개경쟁채용

제7조(심사단계 및 방법) ① 공개경쟁채용 대상자의 심사단계는 기초심사, 전공심사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기초심사는 서류심사 및 최종학위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③ 전공심사는 기초심사를 통과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연구실적물 심사와 공개강의 등을 심사한다.

④ 면접심사는 국가관・교육자의 자질 등을 심사한다.

⑤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외국어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심사단계별 배점비율) ① 심사단계 및 채용분야별(교양・교직・전공이론분야, 전문실기분야, 전공실기분야) 배점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단계별 점수를 합산한다.

② 예능계를 채용할 경우의 심사단계별 점수 반영비율 및 각 세부단계별 점수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외국어・필기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면접점수와 같은 점수 및 비율을 가산한다.

제9조(기초심사) ① 기초심사는 서류심사와 최종학위심사의 2단계로 실시하며, 서류심사 결과 채용과목별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이내의 대상자를 최종대상자로 한다. 단, 동점자는 동점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서류심사는 별지 제1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심사하며, 별지 제1호의 구비서류심사는 위원 전원합의로 "가", "부"를 결정한다.

④ 서류심사시 별지 제3호 내지 제5호 상의 연구실적물량은 최근 4년이내의 연구실적물(논문, 저서)을 인정한다.

⑤ 연구실적물과 채용예정과목과의 관련 여부는 제11조 제2항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이 판단할 수 있다.

⑥ 최종학위심사시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하고, 연구실적물 심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최종학위심사는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에 의하여 심사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3인의 점수만 인정한다.

⑧ 최종학위논문은 기초심사 자료로 사용하며, 전공심사의 연구실적물 심사논문으로 사용할 수 없다.(동일논문 불인정)

제10조(전공심사 대상자 추천) ① 위원회는 기초심사 성적결과를 기준으로 채용과목별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전공심사 대상자로 추천한다. 단, 동점자는 동점자 모두를 전공심사대상자로 추천한다.

② 추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전공심사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1. 최종학위 논문(기초심사)의 채용예정과목과의 근접도 평가점수가 심사위원 3인 이상 "E(40%미만)"의 점수를 받은 자
2.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전공심사) 중 한편이라도 채용예정과목과의 근접도 평가점수가 심사위원 3인이상 "E(40%미만)"의 점수를 받은 자
3. 연구실적물(전공심사) 중 한편이라도 학위논문과의 동일성 여부 평가결과 심사위원 3인 이상으로 부터 70%이상 90%미만 실질적으로 동일성 인정 또는 90%이상 실질적으로 동일성 인정의 평가를 받은 자

제11조(전공심사) ① 전공심사는 연구실적물심사와 공개강의심사 2단계로 실시한다.

②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본 대학 소속 교원 3인과 타 대학 소속 교원 2인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본 대학에 관련분야 전공자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타 대학 관련분야 전공자로 위촉한다.

③ 연구실적물심사는 응시자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한 연구실적물 중 200%(전문실기 및 특정분야 100%)에 대하여 별지 제11-1호 및 제11-2호에 의하여 심사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3인의 점수만 인정하되, 특정분야는 교무회에서 정한다.

④ 연구실적물심사시 연구실적물은 최근 3년이내에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서 제1저자(주 저자)이상의 논문이 10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구실적물심사시 연구실적물 평가는 학술지 구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단, 채용예정과목과의 근접도와 근접도 점수가 D(60%미만)이하인 연구실적물은 예외로 한다.

구 분	국제전문학술지 (SCI, SSCI, A&HCI)	학진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기타논문
등 급	A - B	C - E	E - G

※ 학술지 구분은 본교 전임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규정에 의함

⑥ 공개강의 심사위원은 모집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유사 전공자로서 본 대학 소속 교원 3인과 타대학 소속 교원 2인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본 대학에 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유사전공자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다른 분야 전공자로 위촉한다.

⑦ 공개강의 심사는 별지 제13-1호 내지 제13-3호에 의하여 심사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3인의 심사위원 점수만 인정한다.

⑧ 공개강의심사시 교양교직과 전공이론분야는 이론강의로, 전공실기와 전문실기 분야는 실기강의로 심사한다.

제12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위원은 본 대학 소속 교원 중에서 5인 내지 7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부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심사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면접심사는 별지 제15호에 의하여 심사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점수만 인정한다.

③ 면접심사는 전공심사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영어시험) ① 영어시험은 TEPS, SNULT의 일정한 점수를 반영할 수 있으며, 등급별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TEPS					SNULT				
등급(배점)	점수		등급(배점)	점수	등급(배점)	점수		등급(배점)	점수
A(10점)	900점이상		D(4.0점)	601~700점	A(10점)	91~100		D(4.0점)	61~70
B(8.0점)	801~900점		E(2.0점)	501~600점	B(8.0점)	81~90		E(2.0점)	51~60
C(6.0점)	701~800점		F(0점)	500점 이하	C(6.0점)	71~80		F(0점)	50점 이하

② 영어시험은 전공심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한하여 실시하되, 별지 제17호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 영어시험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실시하되 다른 방법을 적용할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임용예정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전임교원신규채용종합심사 결과 및 추천서(별지 18호)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추천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연구실적물 전공심사 취득환산점수의 합계가 40점 미만인 자(단, 전문실기는 제외)
2. 공개강의심사 평가점수가 40% 미만인 자
3. 면접심사 평가점수가 40% 미만인 자
4. 최종 종합점수가 만점의 60% 미만인 자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한 특정대학 편중제한 해당자는 임용예정후보자 추천 시 제외할 수 있다.

③ 추천인원은 과목별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로 하며, 1인이 응시한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

④ 임용예정후보자의 종합 성적이 동점일 경우, 다음 성적순위에 의거 추천한다.

1. 전공심사 성적우수자
2. 기초심사 성적우수자
3. 면접심사 성적우수자

⑤ 임용예정후보자로 확정된 자가 임용예정 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시에는 차 순위 자를 임용예정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장 특별채용

제15조(특별채용 요구 및 결정) ①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채용 하고자 하는 학과장, 행정부서장, 부속기관의 장은 특별채용 요구서를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학처장은 전항의 특별채용 요구내용을 검토한 후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교무회에 상정한다.

③ 총장은 교무회의 심의 결과를 참작하여 특별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교원특별채용위원회) ① 특별채용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교원특별채용위원회”(이하 “특별채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채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채용교과목(채용전공)별로 따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특별채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고, 위원은 본 대학 소속 교원 및 타 대학 소속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타 대학 소속 교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17조(심사단계 및 방법) 특별채용 대상자의 심사단계는 기본자격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8조(기본자격 심사) ① 기본자격심사는 특별채용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기본자격심사는 별지 제20호에 의거 지원자의 교수자격기준, 연구실적, 경력 등을 종합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본자격심사에 관하여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위원은 본 대학 소속 교원 중에서 5인 내지 7인을 총장이 위촉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교원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심사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면접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심사한다.

1. 면접심사평가서(별지 제21호)에 의하여 심사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의 합을 평균점수로 산출한다.
2. 면접심사 평가서 심사점수는 5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되, 각 항목당 20점으로 한다.
3. 면접심사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미만인 자는 임용예정후보자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부 칙(제594호, 2012. 3.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단계별 배점비율

채 용 분 야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영어시험	계
교양·교직·전공이론분야	40%	50%	10%	(10%)	100%(10%)
전공실기분야	50%	40%	10%	(10%)	100%(10%)
전문실기분야	50%	40%	10%	(10%)	100%(10%)

※ ( )의 영어시험은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별표 2]

심사단계별 세부 배점비율

구 분		기 초 심 사			전 공 심 사			면접심사	영어시험	합 계
		서류심사	최종학위심사	소계	연구실적물심사	공개강의심사	소계			
교양, 교직, 전공이론분야	배점(만점)	60	40	100	70	30	100	20	(10)	220점
	환산점수	24	16	40	35	15	50	10	(10)	100점(10)
전공실기분야	배점(만점)	60	40	100	70	30	100	20	(10)	220점
	환산점수	30	20	50	28	12	40	10	(10)	100점(10)
전문실기분야	배점(만점)	70	30	100	50	50	100	20	(10)	220점
	환산점수	35	15	50	20	20	40	10	(10)	100점(10)

※ ( )의 영어시험은 실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별첨서류 목록

서식목록	제 목	비 고
(별지 1)	구비서류 심사표	
(별지 2)	서류심사 개인별 평가조서	
(별지 3)	서류심사 개인별 평가표 (교양·교직·전공이론 분야)	
(별지 4)	서류심사 개인별 평가표 (전공실기 분야)	
(별지 5)	서류심사 개인별 평가표 (전문실기 분야)	
(별지 6)	서류심사 개인별 총괄표 (교양교직·전공이론분야/전공실기분야/전문실기분야)	
(별지 7)	최종학위논문 개인별 평가표 (교양·교직·전공이론 분야/전공실기 분야)	
(별지 8)	최종학위논문 개인별 평가표 (전문실기 분야)	
(별지 9)	최종학위논문 개인별 총괄표 (교양교직·전공이론분야/전공실기분야/전문실기분야)	
(별지 10)	기초심사 개인별 총괄표 (교양교직·전공이론분야/전공실기분야/전문실기분야)	
(별지 11-1)	연구실적물 전공심사 개인별 평가표 (교양교직·전공이론분야/전공실기분야)	
(별지 11-2)	연구실적물 전공심사 개인별 평가표 (전문실기 분야)	
(별지 12)	연구실적물 전공심사 개인별 평가표	
(별지 13-1)	공개강의 개인별 평가표 (교양·교직·전공이론 분야)	
(별지 13-2)	공개강의(실기수업) 개인별 평가표 (전공실기 분야)	
(별지 13-3)	공개강의(실기수업) 개인별 평가표 (전문실기 분야)	
(별지 14)	공개강의 개인별 총괄표	
(별지 15)	면접심사 개인별 평가표	
(별지 16)	면접심사 개인별 총괄표	
(별지 17)	영어시험 개인별 총괄표	
(별지 18)	전임교원신규채용 종합심사결과 및 추천서	
(별지 19)	서약서	
(별지 20)	기본자격 평가서	
(별지 21)	면접심사 평가서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 심사표

채용예정분야		채용예정과목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심사사항	심 사 기 준	심 사 내 용	심사결과
학위	박사(석사)학위 소지자		
나이	만 세이하		참고사항
제출서류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 초본		
	학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해당자)		
	최종학위 논문		
	연구실적물 목록		
	연구실적물200%(전문실기 100%)		
	지도자경력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 자격증		
	기타		

※심사결과란에 “가·부”표시

년 월 일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판 정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판정란에 “합격·불합격”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서류심사개인별 평가조서

채용예정분야		채용예정과목	

응시번호		성 명	

①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근 무 처	직 명	근무기간		환산율	환산기간	비 고
	합 계						
②대학강의 경 험	대 학 명	강의과목	유사여부	주당시간수	강의기간		년,월
③전공학과 근 접 도	학사과정 전공	석사과정 전공	박사과정 전공				
④학부성적	백분위점수	평점평균	평점평균 만점				
⑤연구실적	연구실적물 제목	저자수	인정환산율	게재지			
⑥지도경력	근 무 처	직 명	지도기간	년, 월	입상실적		
⑦경기실적	대 회 명	입상실적	비 고				
⑧자격증	자격증 종류	심판활동 실적	비 고				

년 월 일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서류심사 개인별 평가표

(교양·교직·전공이론 분야)

채용예정과목	

응시번호		성 명	

합 계	점

☞ 해당 등급에 "○"를 표시하고 해당 등급의 점수를 기재한다.
등급이 없을때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점수와 해당 등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표시를 점수로 인정한다.

1.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 점

(본 대학 "전임교원임용규정 [별표2] 교육경력·연구경력 산출기준 및 자격심사 평정기준"을 적용하되, 석·박사과정 재학연수는 제외함)

A. (5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B. (4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2년6월 이상 3년 미만인 자
C. (3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2년 이상 2년6월 미만인 자
D. (2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1년6월 이상 2년 미만인 자
E. (1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1년 이상 1년6월 미만인자
F. (0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1년 미만인자

2. 대학 강의경력 …… 점

(대학강의 경험은 2년제 대학 포함하되, 학기중인 경력은 제외)

A. (5점) : 채용예정과목을 주당 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4학기 이상인 경우
B. (4점) : 채용예정과목을 주당 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3학기인 경우 또는 채용예정과목과 유사과목을 주당 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4학기인 경우
C. (3점) : 채용예정과목을 주당 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2학기인 경우 또는 채용예정과목과 유사과목을 주당 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3학기인 경우
D. (2점) : 채용예정과목과 유사과목을 주당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2학기인 경우
E. (1점) : 채용예정과목과 유사과목을 주당 2시간이상 강의한 경력이 1학기인 경우
F. (0점) : 채용예정과목과 유사과목을 주당 2시간이상 강의한 경력이 1학기 미만인 경우 및 유사하지 않은 과목을 강의한 경우

3. 전공학과의 근접도 (학부, 대학원 석·박사과정) …… 점

A. (10점) : 대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채용예정과목과 유사한 전공을 이수한 자

B. (7점) : 대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 중 2개의 과정에서 채용예정과목과 유사한 전공을 이수한 자

C. (4점) : 대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 중 1개의 과정에서 채용예정과목과 유사한 전공을 이수 한 자

4. 학부성적 …… 점

A. (5점) : 학부 전학년 성적이 백분율 95%이상인 자

B. (4점) : 학부 전학년 성적이 백분율 90%이상인 자

C. (3점) : 학부 전학년 성적이 백분율 85%이상인 자

D. (2점) : 학부 전학년 성적이 백분율 85%미만인 자

5.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점

(6개국이상 참여하는 학술대회로서 3년 이내의 실적평가)

A. (10점) : 3.0점 이상

B. (8점) : 2.0점 이상

C. (6점) : 1.0점 이상

D. (4점) : 0.5점 이상

E. (2점) : 0.3점 이상

F. (0점) : 0.3점 미만

※ 논문발표자 수와 배점

구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산출방법
배점	1.0	0.7	0.5	0.3	논문발표 배점의 합계

6. 연구실적물량 …… 점

(본 대학 "전임교원임용규정 [별표1] 교육연구실적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논문과 도서만 인정하되, 공동연구 주저자는 인정환산율 10%를 가산함)

A. (25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400점 이상

B. (21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350점 이상 400점미만

C. (17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300점 이상 350점미만

D. (13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250점 이상 300점미만

E. (9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200점이상 250점미만

F. (5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200점미만

논 문	국제전문학술지	국제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기타학술지	인정환산율
배 점	100	60	50	20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도 서	국제전공 학술저서	국내학술 전공저서	전공분야 번역서	편 저	인정환산율
배 점	60	50	20	10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

년 월 일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서류심사 개인별 평가표

(전공실기 분야)

합 계	점

채용예정과목	

응시번호		성 명	

☞ 해당 등급에 "○"를 표시하고 해당 등급의 점수를 기재한다.
등급이 없을때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점수와 해당 등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표시를 점수로 한다.

1.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 점

(본 대학 "전임교원임용규정 [별표2] 교육경력·연구경력 산출기준 및 자격심사 평정기준"을 적용하되, 석·박사과정 재학연수는 제외함)

A. (5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B. (4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2년6월 이상 3년 미만인 자
C. (3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2년 이상 2년6월 미만인 자
D. (2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1년6월 이상 2년 미만인 자
E. (1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1년 이상 1년6월 미만인자
F. (0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1년 미만인자

2. 대학 강의경력 …… 점

(대학강의 경험은 2년제 대학 포함하되, 학기중인 경력은 제외)

A. (5점) : 채용예정과목을 주당 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4학기 이상인 경우
B. (4점) : 채용예정과목을 주당 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3학기인 경우 또는 채용예정과목과 유사과목을 주당 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4학기인 경우
C. (3점) : 채용예정과목을 주당 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2학기인 경우 또는 채용예정과목과 유사과목을 주당 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3학기인 경우
D. (2점) : 채용예정과목과 유사과목을 주당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2학기인 경우
E. (1점) : 채용예정과목과 유사과목을 주당 2시간이상 강의한 경력이 1학기인 경우
F. (0점) : 채용예정과목과 유사과목을 주당 2시간이상 강의한 경력이 1학기 미만인 경우 및 유사하지 않은 과목을 강의한 경우

3. 전공학과의 근접도 (학부, 대학원 석·박사과정) …… 점

A. (5점) : 대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채용예정과목과 유사한 전공을 이수한 자

B. (3점) : 대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 중 2개의 과정에서 채용예정과목과 유사한 전공을 이수한 자

C. (1점) : 대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 중 1개의 과정에서 채용예정과목과 유사한 전공을 이수 한 자

4. 학부성적 …… 점

A. (5점) : 학부 전학년 성적이 백분율 95%이상인 자

B. (4점) : 학부 전학년 성적이 백분율 90%이상인 자

C. (3점) : 학부 전학년 성적이 백분율 85%이상인 자

D. (2점) : 학부 전학년 성적이 백분율 85%미만인 자

5. 연구실적물량 …… 점

(본 대학 "전임교원임용규정 [별표1] 교육연구실적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논문과 도서만 인정하되, 공동연구 주저자는 인정환산율 10%를 가산함)

A. (15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400점 이상

B. (12.5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350점 이상 400점 미만

C. (10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300점 이상 350점 미만

D. (7.5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250점 이상 300점 미만

E. (5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200점 이상 250점 미만

F. (2.5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200점 미만

논 문	국제전문학술지	국제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기타학술지	인정환산율
배 점	100	60	50	20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도 서	국제전공 학술저서	국내학술 전공저서	전공분야 번역서	편 저	인정환산율
배 점	60	50	20	10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6. 지도경력 …… 점

A. (10점) : 최근 5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를 1년 이상 지도한 경력을 포함하여 선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B. (8점) :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를 1년 이상 지도한 경력을 포함하여 선수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C. (6점) : 최근 5년 이내에 선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D. (4점) : 최근 10년 이내에 선수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 (2점) : 최근 10년 이내에 선수 지도경력이 5년 미만인 자
F. (0점) : 최근 10년 이내에 선수 지도경력이 없는 자

7. 경기실적 …… 점

(채용예정과목과 동일한 경기실적으로서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장이 발행한 경기실적증명서를 근거로 함)

A. (10점)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중 1개 대회 3위이내 입상자
B. (8점) : 아시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권위있는 국제대회 중 1개대회 3위이내 입상자
C. (6점) : 국가대표 선수 경력자
D. (4점) : 고등학교 졸업 후 전국규모 국내대회 1위 입상실적이 3회 이상인 자
E. (2점) : 고등학교 졸업 후 전국규모 국내대회 3위이내 입상실적이 3회 이상인 자
F. (0점) : 고등학교 졸업 후 전국규모 국내대회 3위이내 입상실적이 2회 이하인 자

8. 자격증 …… 점

(채용예정과목과 동일한 자격증으로 심판활동 실적은 해당 경기단체장이 발행)

A. (5점) : 국제심판자격증을 가지고 국제심판 활동실적이 있는 자
B. (4점) : 국제심판 자격증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1급)이 있는 자
C. (3점) : 국내심판 자격증을 가지고 국내심판 활동 실적이 있는 자
D. (2점) : 국내심판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소지자
E. (0점) : 국내심판 자격증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미 소지자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

년 월 일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서류심사 개인별 평가표

(전문실기 분야)

합 계	점

채용예정과목	

응시번호		성 명	

☞ 해당 등급에 "○"를 표시하고 해당 등급의 점수를 기재한다.
등급이 없을때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점수와 해당 등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표시를 점수를 인정한다.

1.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 …… 점

(본 대학 "전임교원임용규정 [별표2] 교육경력·연구경력 산출기준 및 자격심사 평정기준"을 적용하되, 석·박사과정 재학연수는 제외함)

A. (5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B. (4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2년6월 이상 3년 미만인 자
C. (3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2년 이상 2년6월 미만인 자
D. (2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1년6월 이상 2년 미만인 자
E. (1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1년 이상 1년6월 미만인자
F. (0점) : 교육경력과 연구경력이 1년 미만인자

2. 대학 강의경력 …… 점

(대학강의 경험은 2년제 대학 포함하되, 학기중인 경력은 제외)

A. (5점) : 채용예정과목을 주당 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4학기 이상인 경우
B. (4점) : 채용예정과목을 주당 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3학기인 경우 또는 채용예정과목과 유사과목을 주당 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4학기인 경우
C. (3점) : 채용예정과목을 주당 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2학기인 경우 또는 채용예정과목과 유사과목을 주당 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3학기인 경우
D. (2점) : 채용예정과목과 유사과목을 주당2시간 이상 강의한 경력이 2학기인 경우
E. (1점) : 채용예정과목과 유사과목을 주당 2시간이상 강의한 경력이 1학기인 경우
F. (0점) : 채용예정과목과 유사과목을 주당 2시간이상 강의한 경력이 1학기 미만인 경우 및 유사하지 않은 과목을 강의한 경우

3. 연구실적물량 …… 점

(본 대학 "전임교원임용규정 [별표1] 교육연구실적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논문과 도서만 인정하되, 공동연구 주저자는 인정환산율 10%를 가산함)

A. (10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200점 이상
B. (8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150점 이상 200점 미만
C. (6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100점 이상 150점 미만
D. (4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50점 이상 100점 미만
E. (2점) :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 환산점수 50점 미만

논 문	국제전문학술지	국제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기타학술지	인정환산율
배 점	100	60	50	20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도 서	국제전공 학술저서	국내학술 전공저서	전공분야 번역서	편 저	인정환산율
배 점	60	50	20	10	1인 100%, 2인 70%, 3인 50%, 4인이상 30%

4. 지도경력 …… 점

○ 채용예정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지도경력으로 입상실적은 해당지도경력 기간 중에 입상한 선수의 실적임
○ 국제규모대회는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외에 이와 동등하다고 본교가 인정하는 대회를 말함
○ 평가방법(접수일 현재)
1. 최근 5년미만 기간 지도경력 : 해당등급
2. 최근 5년이상-10년미만 기간 지도경력 : 1등급 하향평가
3. 최근 10년이상 기간의 지도경력 : 2등급 하향평가
○ 평가항목별 지도경력은 해당지도경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뜻함

A. (25점) : 올림픽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중 1개대회 1위 입상자 지도경력
B. (23점) : 올림픽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중 1개대회 2위 입상자 지도경력,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지도경력, 유니버시아드대회 1위 입상자 지도경력
C. (21점) : 올림픽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중 1개대회 3위 입상자 지도경력, 아시아경기대회 2위 입상자 지도경력, 아시아선수권대회 1위 입상자 지도 경력, 유니버시아드대회 2위 입상자 지도경력
D. (19점) : 아시아경기대회 3위 입상자 지도경력, 아시아선수권대회 2위 또는 3위 입상자 지도경력, 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입상자 지도경력
E. (17점) : 올림픽출전자 지도경력 또는 한국신기록이상 수립자 지도경력
F. (15점) : 국가대표선수 1년 이상 지도경력 또는 국제규모대회 3위이내 *입상자 지도경력*
G. (13점) : 국가대표선수를 1년 미만 지도한 경력이 있는 자
H. (11점) : 전국규모대회 대학(일반)부 1위 입상자 3회 이상 지도경력

I. (9점) : 전국규모대회 대학(일반)부 1위 입상자 1회 이상 지도경력
J. (7점) : 선수 지도경력이 1년이상인 자
k. (5점) : 선수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인 자
L. (0점) : 선수 지도경력이 없는 자

5. 경기실적 …… 점

(채용예정과목과 동일한 경기실적으로서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장이 발행한 경기실적 증명서를 근거로 함)

A. (20점)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중 1개대회 1위 입상자
B. (18점)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중 1개대회 2위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또는 유니버시아드대회 1위 입상자
C. (16점) :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중 1개대회 3위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2위 입상자 , 아시아선수권 대회 1위 입상자 또는 유니버시아드대회 2위 입상자
D. (14점) : 아시아경기대회 3위 입상자, 아시아선수권대회 2위, 3위 입상자 또는 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입상자
E. (12점) : 올림픽 출전자 또는 한국신기록 이상 수립자
F. (10점) : 국가대표 선수로서 1년 이상인 자
G. (8점) : 국가대표 선수로서 1년 미만인 자
H. (6점) : 고등학교 졸업 후 전국규모대회에서 1위 입상실적이 3회 이상인 자
I. (4점) : 고등학교 졸업 후 전국규모대회에서 1위 입상실적이 1회 이상인 자
J. (2점) : 고등학교 졸업 후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실적이 1회 이상인 자
k. (0점) : 고등학교 졸업 후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실적이 없는 자

6. 자격증 …… 점

(채용예정과목과 동일한 자격증으로 심판활동 실적은 해당 중앙경기단체장이 발행)

A. (5점) : 국제심판 자격증을 가지고 국제심판 활동실적이 있는 자
B. (4점) : 국제심판 자격증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1급)이 있는 자
C. (3점) : 국내심판 자격증을 가지고 국내심판 활동 실적이 있는 자
D. (2점) : 국내심판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소지자
E. (0점) : 국내심판 자격증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미 소지자

7. 박사학위소지자 가점 …… 점

A. (7.0점) : 박사학위 소지자(서류심사 점수의 10%)
B. (0점) : 석사학위 소지자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

년 월 일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위 원 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서류심사 개인별 총괄표

(교양·교직·전공이론 분야 / 전공실기 분야 / 전문실기 분야)

채용예정과목	

응시번호	성 명	교육 및 연구 경력	대학 강의 경력	전공 학과 근접도	학부 성적	국제 학술 대회 논문 발표	연구 실적 물량	지도 경력	경기 실적	자격증	합계	박사학위 가산점	비 고
교양·교직·전공 이론 분야		5	5	10	5	10	25				60점	-	
전공실기분야		5	5	5	5		15	10	10	5	60점	-	
전문실기 분야		5	5				10	25	20	5	70점	7점	

년 월 일

확인자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최종학위논문개인별 평가표

(교양·교직·전공이론 분야 / 전공실기 분야)

채용예정과목		일련번호	
학위논문 제목			

심사위원 소속	직 급	성 명	전공과목(분야)	작성일자
대학교		(인)		. . .

☞ 심사요령

▶ 평가표의 평가기준으로 등급을 심사하고 등급에 ○를 표시하고 점수 칸에 점수를 기재하되 점수와 등급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등급 표시를 점수로 인정합니다.

▶ 평가항목과 종합평가의 의견란에는 평가자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인)

1. 최종학위논문이 채용예정 과목과의 근접도..... 점

A. (20점) : 채용예정 과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B. (16점) : 채용예정 과목과 근접도가 80% 이상
C. (12점) : 채용예정 과목과 근접도가 60%이상 80%미만
D. (8점) : 채용예정 과목과 근접도가 40%이상 60%미만
E. (4점) : 채용예정 과목과 근접도가 40%미만

의견

2.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 점

(관련 학계의 발전과 현장에서의 실용성 정도 및 기여도 여부)

A. (20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우수함
B. (16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우수함
C. (12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보통임
D. (8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함
E. (4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미흡함

의견

● **심사위원의 종합평가**

(별지 제8호 서식)

최종학위논문 개인별 평가표

(전문실기 분야)

채용예정과목		일련번호	
학위논문 제목			

심사위원 소속	직 급	성 명	전공과목(분야)	작성일자
대학교		(인)		. . .

☞ 심사요령

▶ 평가표의 평가기준으로 등급을 심사하고 등급에 ○를 표시하고 점수 칸에 점수를 기재하되 점수와 등급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등급 표시를 점수로 인정합니다.

▶ 평가항목과 종합평가의 의견란에는 평가자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인)

1. 최종학위논문이 채용예정 과목과의 근접도..... 점

A. (15점) : 채용예정 과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B. (12점) : 채용예정 과목과 근접도가 80% 이상
C. (9점) : 채용예정 과목과 근접도가 60%이상 80%미만
D. (6점) : 채용예정 과목과 근접도가 40%이상 60%미만
E. (3점) : 채용예정 과목과 근접도가 40%미만

의견

2.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 점

(관련 학계의 발전과 현장에서의 실용성 정도 및 기여도 여부)

A. (15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우수함
B. (12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우수함
C. (9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보통임
D. (6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함
E. (3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미흡함

의견

● **심사위원의 종합평가**

(별지 제9호 서식)

최종학위논문 개인별 총괄표

(교양·교직·전공이론 분야 / 전공실기 분야/ 전문실기 분야)

채용예정과목	

응시번호	성 명	최종학위논문 제목	심 사 위 원					평균점수	근접도 40%미만 (인원수)
			A	B	C	D	E		

※ 평균점수 : 5명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점수 합계평균

년 월 일

확인자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기초심사 개인별 총괄표

(교양·교직·전공이론 분야 / 전공실기 분야 / 전문실기 분야)

채용예정과목	

응시번호	성 명	서류심사	학위심사	합 계	추천여부	비 고
만 점		60	40	100		

※전문실기분야의 만점은 70:30=100점임

년 월 일

위와 같이 전공심사 대상자로 추천함.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제11-1호 서식)

연구실적물 전공심사 개인별 평가표

(교양·교직·전공이론 분야 / 전공실기 분야)

채용예정과목		응시번호	
연구실적물 제목			

심사위원 소속	직 급	성 명	전공과목(분야)	심사일자
		(인)		. . .

☞ 심사요령

▶평가표의 평가기준으로 등급을 심사하고 등급에 ○를 표시하고 점수 칸에 점수를 기재하되 점수와 등급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등급 표시를 점수로 인정합니다.

▶각 항목별 평가시 국제전문학술지 (SCI, SSCI, A&HCI)에 등재된 논문은 A, B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논문은 C, D, E로 평가하되 채용예정과목과의 근접도가 D(60%미만)이하인 경우 및 "1. 채용예정 과목과의 근접도" 평가시에는 학술지 구분에 따른 차등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와 다르게 평가하였을 경우 가장 근접한 점수를 인정하여 배점합니다.

▶평가항목과 종합평가의 의견란에는 평가자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예정 과목과의 근접도..... 점

A. (18점) : 채용예정 과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B. (15점) : 채용예정 과목과 근접도가 80% 이상
C. (12점) : 채용예정 과목과 근접도가 60%이상 80%미만
D. (9점) : 채용예정 과목과 근접도가 40%이상 60%미만
E. (6점) : 채용예정 과목과 근접도가 40%미만

의견

심사위원:	(인)

2. 연구내용의 창의성 ..... 점

(연구목적 및 연구결과에 대한 독창성)

A. (14점) : 연구 내용의 창의성이 매우 우수함
B. (12점) : 연구 내용의 창의성이 우수함
C. (10점) : 연구 내용의 창의성이 보통보다 우수함.
D. (8점) : 연구 내용의 창의성이 보통임
E. (6점) : 연구 내용의 창의성이 보통보다 낮음
F. (4점) : 연구 내용의 창의성이 낮음
G. (2점) : 연구 내용의 창의성이 매우 낮음

의견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점

(연구방법, 도구, 연구절차의 과정을 통한 양적·질적 방법론의 타당성)

A. (14점) : 연구 방법의 타당성이 매우 우수함
B. (12점) : 연구 방법의 타당성이 우수함
C. (10점) : 연구 방법의 타당성이 보통보다 우수함.
D. (8점) : 연구 방법의 타당성이 보통임
E. (6점) : 연구 방법의 타당성이 보통보다 낮음
F. (4점) : 연구 방법의 타당성이 낮음
G. (2점) : 연구 방법의 타당성이 매우 낮음

의견

4. 논리성 및 구체성..... 점

(연구목적, 내용, 방법, 결과 등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의 여부)

A. (14점) : 연구물의 논리성 및 구체성이 매우 우수함
B. (12점) : 연구물의 논리성 및 구체성이 우수함
C. (10점) : 연구물의 논리성 및 구체성이 보통보다 우수함.
D. **(8점)** : 연구물의 논리성 및 구체성이 보통임
E. (6점) : 연구물의 논리성 및 구체성이 보통보다 낮음
F. (4점) : 연구물의 논리성 및 구체성이 낮음
G. (2점) : 연구물의 논리성 및 구체성이 매우 낮음

의견

심사위원:	(인)

5.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 점

(관련 학계의 발전과 현장에서의 실용성 정도 및 기여도 여부)

A. (10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우수함
B. (9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우수함
C. (8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보통보다 우수함.
D. **(7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보통임
E. (6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보통보다 낮음
F. (4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음
G. (3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음

의견

6. 전공심사 대상 논문과 학위 논문과의 동일성 여부.....

※ 학위논문과의 동일논문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A” 또는 “B”로 평가할 경우 탈락 처리

A. : 학위논문과의 내용이 90%이상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됨
B. : 학위논문과의 내용이 70%이상 90%미만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됨
C. : 학위논문과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음.

● **심사위원의 종합평가**

(별지 제11-2호 서식)

연구실적물 전공심사 개인별 평가표

(전문실기 분야)

채용예정과목		일련번호	
연구실적물 제목			

심사위원 소속	직 급	성 명	전공과목(분야)	심사일자
		(인)		. . .

☞ 심사요령

▶평가표의 평가기준으로 등급을 심사하고 등급에 ○를 표시하고 점수 칸에 점수를 기재하되 점수와 등급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등급 표시를 점수로 인정합니다.

▶각 항목별 평가시 국제전문학술지 (SCI, SSCI, A&HCI)에 등재된 논문은 A, B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논문은 C, D, E로 평가하되 채용예정과목과의 근접도가 D(60%미만)이하인 경우 및 "1. 채용예정 과목과의 근접도" 평가시에는 학술지 구분에 따른 차등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와 다르게 평가하였을 경우 가장 근접한 점수를 인정하여 배점합니다.

▶평가항목과 종합평가의 의견란에는 평가자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예정 과목과의 근접도..... 점

A. (14점) : 채용예정 과목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B. (11점) : 채용예정 과목과의 근접도가 80% 이상
C. (8점) : 채용예정 과목과의 근접도가 60%이상 80%미만
D. (5점) : 채용예정 과목과의 근접도가 40%이상 60%미만
E. (2점) : 채용예정 과목과의 근접도가 40%미만

의견

심사위원 :	(인)

2. 연구내용의 창의성 ..... 점

(연구목적 및 연구결과에 대한 독창성)

A. (10점) : 연구 내용의 창의성이 매우 우수함
B. (8.5점) : 연구 내용의 창의성이 우수함
C. (7.0점) : 연구 내용의 창의성이 보통보다 우수함.
D. (5.5점) : 연구 내용의 창의성이 보통임
E. (4.0점) : 연구 내용의 창의성이 보통보다 낮음
F. (2.5점) : 연구 내용의 창의성이 낮음
G. (1.0점) : 연구 내용의 창의성이 매우 낮음

의견

3. 연구방법의 타당성 ..... 점

(연구방법, 도구, 연구절차의 과정을 통한 양적·질적 방법론의 타당성)

A. (10점) : 연구 방법의 타당성이 매우 우수함
B. (8.5점) : 연구 방법의 타당성이 우수함
C. (7.0점) : 연구 방법의 타당성이 보통보다 우수함.
D. **(5.5점)** : 연구 방법의 타당성이 보통임
E. (4.0점) : 연구 방법의 타당성이 보통보다 낮음
F. (2.5점) : 연구 방법의 타당성이 낮음
G. (1.0점) : 연구 방법의 타당성이 매우 낮음

의견

4. 논리성 및 구체성..... 점

(연구목적, 내용, 방법, 결과 등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의 여부)

A. (10점) : 연구물의 논리성 및 구체성이 매우 우수함
B. (8.5점) : 연구물의 논리성 및 구체성이 우수함
C. (7.0점) : 연구물의 논리성 및 구체성이 보통보다 우수함.
D. (5.5점) : 연구물의 논리성 및 구체성이 보통임
E. (4.0점) : 연구물의 논리성 및 구체성이 보통보다 낮음
F. (2.5점) : 연구물의 논리성 및 구체성이 낮음
G. (1.0점) : 연구물의 논리성 및 구체성이 매우 낮음

의견

심사위원 :	(인)

5.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 점

(관련 학계의 발전과 현장에서의 실용성 정도 및 기여도 여부)

A. (6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우수함
B. (5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우수함
C. (4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보통보다 우수함.
D. (3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보통임
E. (2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보통보다 낮음
F. (1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낮음
G. (0점) : 학문 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음

의견

6. 전공심사 대상 논문과 학위 논문과의 동일성 여부.....

※ 학위논문과의 동일논문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위원 5명 중 3명이 “A” 또는 “B”로 평가할 경우 탈락 처리

A. : 학위논문과의 내용이 90%이상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됨
B. : 학위논문과의 내용이 70%이상 90%미만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됨
C. : 학위논문과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음.

● **심사위원의 종합평가**

(별지 제12호 서식)

연구실적물 전공심사 개인별평가표

채용예정분야		채용예정과목	

응시번호		성 명	

연구실적물 제목	저 자	인정 환산율 (%)	위원회	심사위원					평균 점수	취득 환산 점수	평가 등급
				A	B	C	D	E			
계		(%)									

※ 평균점수 : 심사위원 5명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점수 합계평균에 위원회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

※ 취득환산점수 : $\frac{\text{편당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text{총 인정환산율 (200\% 기준)}} \times$ 평균점수

년 월 일

확인자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별지 제13-1호 서식)

공개강의 개인별 평가표

(교양·교직·전공이론 분야)

채용예정과목		응시번호	
강 의 제 목			

심사위원 소속	직 급	성 명	전공과목(분야)	심사일자
		(인)		. . .

☞ **심사요령**

▶ 평가표의 평가기준으로 등급을 심사하고 등급에 "○"를 표시하며 점수칸에 점수를 기재하되 점수와 등급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등급 표시를 점수로 인정합니다.

▶ 종합평가의 의견란에는 평가자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응시번호		심사위원	(인)

1. 강의 계획서의 내용이 조직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 점

A. (5.0점) : 매우 우수함
B. (3.5점) : 우수함
C. (2.5점) : 보통임
D. (1.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2. 강의기법은 우수한가? (언어 구사력, 학문적 용어, 논리성 등)..... 점

A. (5.0점) : 매우 우수함
B. (3.5점) : 우수함
C. (2.5점) : 보통임
D. (1.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3. 최근 학문의 경향 반영, 적절성 및 발문과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적절한가?.. 점

A. (5.0점) : 매우 우수함
B. (3.5점) : 우수함
C. (2.5점) : 보통임
D. (1.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4. 강의의 도입-전개-정리 및 평가과정의 진행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점

A. (5.0점) : 매우 우수함
B. (3.5점) : 우수함
C. (2.5점) : 보통임
D. (1.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5. 외국어 강의 및 답변 능력은 우수한가?..... 점

A. (10점) : 매우 우수함
B. (7.5점) : 우수함
C. (5.0점) : 보통임
D. (2.5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응시번호		심사위원	(인)

● 심사위원의 종합평가

“0”점 평가한 항목에 대한 의견

(별지 제13-2호 서식)

공개강의(실기수업) 개인별 평가표

(전공실기 분야)

채용예정과목		응시번호	
강 의 제 목			

심사위원 소속	직 급	성 명	전공과목(분야)	심사일자
		(인)		. . .

☞ **심사요령**

▶ 평가표의 평가기준으로 등급을 심사하고 등급에 "○"를 표시하며 점수칸에 점수를 기재하되 점수와 등급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등급 표시를 점수로 인정합니다.

▶ 종합평가의 의견란에는 평가자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응시번호		심사위원	(인)

1. 강의 계획서의 내용이 조직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 점

A. (5.0점) : 매우 우수함
B. (3.5점) : 우수함
C. (2.5점) : 보통임
D. (1.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2. 실기시범, 동작지도 및 각종 교육기자재의 사용능력은 우수한가?..... 점

A. (7.5점) : 매우 우수함
B. (5.0점) : 우수함
C. (3.5점) : 보통임
D. (2.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3. 최근 이론의 경향 반영, 적절성 및 발문과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적절한가?. 점

A. (5.0점) : 매우 우수함
B. (4.0점) : 우수함
C. (2.5점) : 보통임
D. (1.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4. 강의의 도입-전개-정리 및 평가 과정의 진행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점

A. (5.0점) : 매우 우수함
B. (3.5점) : 우수함
C. (2.5점) : 보통임
D. (1.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5. 외국어 강의 및 답변 능력은 우수한가?..... 점

A. (7.5점) : 매우 우수함
B. (5.0점) : 우수함
C. (3.5점) : 보통임
D. (2.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응시번호		심사위원	(인)

● 심사위원의 종합평가

“0”점 평가한 항목에 대한 의견

(별지 제13-3호 서식)

공개강의(실기수업) 개인별 평가표

(전문실기 분야)

채용예정과목		응시번호	
강 의 제 목			

심사위원 소속	직 급	성 명	전공과목(분야)	심사일자
		(인)		. . .

☞ **심사요령**

▶ 평가표의 평가기준으로 등급을 심사하고 등급에 "○"를 표시하며 점수칸에 점수를 기재하되 점수와 등급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등급 표시를 점수로 인정합니다.

▶ 종합평가의 의견란에는 평가자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응시번호		심사위원	(인)

1. 강의 계획서의 내용이 조직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 점

A. (8.0점) : 매우 우수함
B. (6.0점) : 우수함
C. (4.0점) : 보통임
D. (2.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2. 실기시범, 동작지도 및 각종 교육기자재의 사용능력은 우수한가?..... 점

A. (13.0점) : 매우 우수함
B. (10.0점) : 우수함
C. (6.5점) : 보통임
D. (3.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3. 최근 이론의 경향 반영, 적절성 및 발문과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적절한가? 점

A. (8.0점) : 매우 우수함
B. (6.0점) : 우수함
C. (4.0점) : 보통임
D. (2.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4. 강의의 도입-전개-정리 및 평가 과정의 진행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점

A. (8.0점) : 매우 우수함
B. (6.0점) : 우수함
C. (4.0점) : 보통임
D. (2.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5. 외국어 강의 및 답변 능력은 우수한가?..... 점

A. (13.0점) : 매우 우수함
B. (10.0점) : 우수함
C. (6.5점) : 보통임
D. (3.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응시번호		심사위원	(인)

● 심사위원의 종합평가

“0”점 평가한 항목에 대한 의견

(별지 제14호 서식)

공개강의 개인별 총괄표

채용예정분야		채용예정과목	

응시번호	성 명	심 사 위 원					평균점수	"0"점평가 (유효개수)
		A	B	C	D	E		

※ 평균점수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 합계평균

년 월 일

확인자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

면접심사 개인별 평가표

채용예정과목		응시번호	
강 의 제 목			

심사위원 소속	직 급	성 명	전공과목(분야)	심사일자
		(인)		. . .

심사요령

▶ 평가표의 평가기준으로 등급을 심사하고 등급에 "○"를 표시하며 점수칸에 점수를 기재하되 점수와 등급 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등급 표시를 점수로 인정합니다.

▶ 종합평가의 의견란에는 평가자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응시번호		심사위원	(인)

1. 인성 및 가치관..... 점

A. (3.0점) : 매우 우수함
B. (2.0점) : 우수함
C. (1.5점) : 보통임
D. (1.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2. 교육관 및 국가관..... 점

A. (3.0점) : 매우 우수함
B. (2.0점) : 우수함
C. (1.5점) : 보통임
D. (1.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3.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발전계획..... 점

A. (6.0점) : 매우 우수함
B. (4.5점) : 우수함
C. (3.0점) : 보통임
D. (1.5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4. 외국어 능력..... 점

A. (4.0점) : 매우 우수함
B. (3.0점) : 우수함
C. (2.0점) : 보통임
D. (1.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5.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기여도..... 점

A. (4.0점) : 매우 우수함
B. (3.0점) : 우수함
C. (2.0점) : 보통임
D. (1.0점) : 미흡함
E. (0점) : 매우 미흡함

● 심사위원의 종합평가

“0”점 평가한 항목에 대한 의견

(별지 제16호 서식)

면접심사 개인별 총괄표

채용예정분야		채용예정과목	

응시번호	성 명	심 사 위 원							평균점수	"0"점평가 (유효개수)
		A	B	C	D	E	F	G		

※ 평균점수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 합계평균

년 월 일

확인자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별지 제17호 서식)

영어시험 개인별 총괄표

채용예정과목	

응 시 번 호	성 명	등급	점수	비 고

년 월 일

확인자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별지 제18호 서식)

전임교원신규채용 종합심사결과 및 추천서

채용예정분야	채용예정과목	채용예정인원	성 명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영어시험	합 계	추천순위	추천여부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기준에관한규정 제14조에 의거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예정후보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전임교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별지 제19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신규채용(　　)위원으로서 관계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할 것이며, 동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상 비밀은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기본자격평가서

가. 인적사항

학부(과)명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 명	

나. 심사항목 평정표

심사항목	심사기준	비 고	
1. 교수자격기준 심사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5에 의한 임용자격 충족여부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의 별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공통	
2. 연구실적심사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4조에 의한 연구실적물 충족여부 등 연구능력 심사	택1	
3. 경력심사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4조에 의한 경력 충족여부 등 개인경력 심사		
종 합 의 견		심사결과	
		적격	부적격

위와 같이 학년도 학기 교수 특별채용 기본자격 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직 : 성명 : (인)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면접심사평가서

학부(과)명		채용분야	
응시번호		성 명	

	심 사 항 목	배점	점수
면 접 심 사	1. 인성 및 가치관	20	
	2 교육관 및 국가관	20	
	3.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발전계획	20	
	4. 외국어 능력	20	
	5.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기여도	20	
	합 계	100	
(종합적인 면접의견 : 의견이 있을 경우)			

※ 심사위원이 면접심사 점수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위와 같이 학년도 학기 교수 특별채용 면접 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 직명 : 성명 : (인)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